

(한국유가공협회 공고 2021 - 2 호 : 2021년 1월 4일)

제10차년도 한·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정 및 추천세부요령

1. 근 거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9-71호)

2. 품목 및 물량

- 치즈류 : 9,133톤

3. 품목별 적용 HSK 세번

- 치즈류

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20.0000, 0406.30.0000,
0406.90.2000, 0406.90.3000, 0406.90.4000, 0406.90.9000

4. 적용기간 : 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 까지

5. 적용세율 : 0%

6. 배정 및 추천대상자 : 과거 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등 실수요업체

- 본회 공고일 현재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
(구.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을 득 한자에 한함

7. 신청, 배정, 추천 제외대상

- 본회 공고일 이후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
(구.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을 득 한 업체
- 제9차년도 한·미FTA 관세할당 배정물량 반납 없이 배정물량 이행률 95% 이하인 업체
- 과거 2년간(2019~2020년) 치즈 수입실적 중 FTA로 인해 배정받은 물량만 수입한 업체 (해당품목 : 치즈)
- 과거 2년간(2019~2020년) 치즈 수입물량 중 관세를 납부한 물량이 30%미만인 업체 (해당품목 : 치즈)

8. 신청기간 : 2020. 1. 4(월) ~ 2020. 1. 15(금)

9. 배정 및 추천대행기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
10. 배정기준

□ 전체물량의 90%와 10%를 각각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에 배정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존업체 : 과거 2년간(2019~2020)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· 신규업체 : 과거 2년간(2019~2020)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|
|---|

가. 기존업체 배정

○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90%는 기존업체에 1월중 일괄 배정

- 신청물량은 전년실적 대비 최대 2배만 신청가능
- 과거 2년간(2019~2020) 대 세계 수입실적 90%와 당해 연도 신청물량 10%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. 단, 필요시 최소량을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
- 배정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납물량에 포함하여 배정

나. 신규업체 배분

○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10%는 신규업체에 1월중 일괄·균등 배정

- 업체당 배정물량은 기존업체에 대한 최소 배정량을 초과할 수 없음
- 배정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업체에 재배정

다. 반납물량 및 미소진 예상량 재배정

○ 1월~6월 : 기존방식 적용

- 배정대상 : 누락된 기존업체 및 신규업체 배분
(본회 공고일 현재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을 득한자에 한함)

○ 7월~12월 : 선착순 배정

- 배정대상 : 신규업체 및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
(단, B/L, 인보이스 등 수입서류 증빙서류 제출 필수)
- 배정방법 : 동일 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정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

신청물량 비율로 배정

라. 상한선제한

- 물량의 적정배정을 위하여 업체당 배정 상한물량을 전체물량의 10% 이내로 한다

11. 추천 대상 원산지 : 미합중국

12. 추천서 교부

-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(제2019-71호)에 의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

13. 추천서 유효기간

-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

14. 신청서류

○ 관세할당 물량 배정 신청 시

(1) 유제품 관세할당물량 배정 희망량 신청서 1부(별지 1)

(2) 과거 2년간 수입실적 증빙서류

-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부하는 “납세의무자용 신고건별 수입실적 증명서” (추천대상HS코드, 관세, 부가세 항목 선택)

(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(4)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

(구.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 사본 1부

○ 관세할당 물량 배정 후 할당물량 추천 신청 시

- (1)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(별지 2)
- (2) 선하증권 사본1부
- (3) 상업송장 사본 1부
- (4)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(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
- (5) 원산지 관련 서류 1부

15. 이행율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

- 관세율 할당물량의 완전한 사용촉진 (수입 이행률 95%이상)을 위하여 배정 받은 업체에서 미 이행이 예상되는 쿼터량은 사전 적용기간 **종료 2개월 전(2021년 10월 31일)까지** 반납하여야 한다
- 이행률 촉진을 위하여 배정받은 업체에서 적용 **종료 2개월 전(2021년 10월 31일)까지** 반납 없이 관세할당 배정물량의 이행률이 95% 이하일 경우 차기 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
- 기타 이행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에게 이행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

16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
- 신청서 교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 홈페이지(www.koreadia.or.kr)에서 다운로드
- 접수처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 - 신청방법 : E-mail (jms@koreadia.or.kr)담당 조민상 대리 접수
 - 신청서 접수 시 이메일 제목에 “제10차년도 한·미 FTA 신청서 000업체명” 반드시 명기
 -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접수 확인전화 요망
- 문의사항 : (사) 한국유가공협회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 물량 담당 (전화 : 02-584-3631)

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장

